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22차	일자	2021.05.12.	장소	ZOOM화상회의
----	-----	----	-------------	----	----------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X	O	O	△	X	O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O	O	X	O	O	O	9/13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불참
경영경제대학	없음
사범대학	없음
사회과학대학	불참
약학대학	불참
예술대학	없음
의과대학	불참
인문대학	없음
자연과학대학	없음
통일공대	불참
동아리연합회	없음

2 보고안건

1. 총학생회장단 보고

2. 집행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활동보고

중앙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 총학생회실 상주 사업 진행 중
	(집행위원회) 학생총회 참여 격려 홍보 손글씨 이벤트 명단 취합 중
	(집행위원회) 전학대회 준비 중
	(교육자치) 교양과목 온라인 강의 10주차 피드백 전달, 11주차 진행 예정
	(홍보소통) 학내 노동자 연대 영상 편집 중
	(홍보소통) 푸양 2차 푸레젠트 굿즈 발송 완료
산하위원회	(문화위원회) 봄 축제 준비 중
	(인권복지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장애인권위원회) 인권문화주간 준비 중

3 논의안건

1. 예산자치제 추가 자료 검토

***첨부자료 참조**

총: 예산자치제 추가 자료 검토이다. 마케팅 연구회와 흑룡 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마케팅 연구회 단체가 제출하신 추가 자료이다. 2분간 정독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총: 시간이 모두 종료되었다. 해당 자료에 대한 대표자분들의 의견 받도록 하겠다.

인문.정: 혹시 이 단체가 원래 30만원 지원했던 단체인지?

총: 맞다

인문.정: 원래와 동일하게 30만원 안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통비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계산을 하여 교통비 제외하니 24만 6천원이 나오므로 그것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경경.정: 해당 의견 동의한다.

사범.정: 동의한다.

부총: 동의한다.

(이하 동의의견)

총: 더 이상 의견은 없는 것으로 하고 흑룡 단체 자료를 보도록 하겠다. 정독 시간 2분 가지도록 하겠다. 시간 종료 되었다. 대표자 분들은 의견 내주시길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은 110만원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여 동의한다.

부총: 동의한다.

사범.정: 동의한다.

(이하 동의의견)

총: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마케팅 연구회에 대한 의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다. 의결명 작성 중에 있으니 잠시만 대기해주시길 바란다. 교통비를 제외한 금액을 계산해보니 24만 6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의결결과>

의결명	마케팅 연구회에 예산자치제 금액 24만 6천원을 지원한다.						
출석	8	찬	8	반	0	기권	0

다음으로 흑룡 단체에 대한 의결이다. 흑룡의 예산자치제 신청 금액인 110만원을 지원한다에 대한 의결이다.

<의결결과>

의결명	흑룡에 예산자치제 금액 110만원을 지원한다.						
출석	8	찬	7	반	0	기권	1

2. 전학대회 개정안 논의

총 : 다음으로 전학대회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총학생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

겠다.

부총 : 일단 첫 번째로 장을 나열한 이유는 이 개정안이 장의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이다. 순서의 기준은 총칙과 회원, 그리고 회원을 참여 대상으로 하는 의결기구, 대표자를 참여대상으로 하는 의결기구, 총부학생회장과 각 집행기구, 그 다음에 단대와 동연이 있고. 나머지 재정 선거 등의 부차적인 항목으로 순서를 다시 나열했다. 순서를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다. 지금 이 문서가 신고 대조표가 아니고 개정을 제안하는 내용을 모아둔 것이기 때문에 원본과는 순서의 차이가 매우 클 것이다. 감안해서 봐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총: 그리고 제가 위에 목록에서 산하기구하고 재정도 괄호 표시를 했어야 했는데, 원안에서 위원회와 재정에 관련되는 회칙 개정이 아니고 재정이다. 지금 괄호가 쳐진 사항 같은 경우. 즉 산하기구와 재정 조항의 경우에는 총학생회 내부에서 계속 심의를 거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리는 개정안에는 내용을 담지 못했다. 13장 같은 경우는 원안을 그대로 적어놔고, 저희 선본 때 공약에 따라서 강화된 재정조항을 담당국에서 논의 진행 중이다. 내일에는 그 안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10장 산하기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총학생회가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의 개정조안에 관해서는 논의 내용에 담아놔으나, 체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중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논의가 완료되어야 최종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총칙이 바뀐 것은 거의 없고 하나 있다. 자문위원회 라는 조항이 원본에 있다. 아무래도 원본은 개인이 pdf를 참조하셔야 할 것 같다. 자문위원회는 학교 교수를 비롯한 학교 인원과 학생회 인원으로 구성되어서 학교 행정에 관련된 사항을 건의 및 참여하는 기구를 명시하는데요. 일단 임의 해당 기구가 사문화된 조항이고, 학생회라는 단체가 해당 기구 없이도 학교 행정에 대해 건의하고 참여하는 관례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현재 필요가 없는 조항이라는 판단에서 개정 내용에서 삭제하였다. 나머지 총칙 사항은 동일하거나 용어의 일부 수정이 전부일 것이라 생각한다.

잠시 화면을 정비할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장에서 회원을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개정안에서는 2장을 신설해서 따로 규정하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2장을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 드리겠다. 일단 1장에 대해 오늘은 의결하는 자리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나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인문.정 : 인문대학 피드백 없다.

예술.정 : 피드백 없다.

자연.비대위 : 자연대 피드백 없다.

(이하 동일의견)

부총 : 그럼 2장으로 넘어가겠다. 일단 2장은 원래 1장에서 회원에 관해 규정하던 것을 2장을 따로 신설하여 표기한 것이고, 관련 조항 같은 경우는 단과대 회칙이 총학생회칙보다 더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과대 회칙을 참고를 했습니다. 일단 회원의 자격요건이 개정안으로 바뀐 것은 없고 회원의 권리를 나열해서 명시를 했고. 그 다음 회원의 의무 같은 것도 원래 1장에 있는 조항을 참고해서 가져왔다.

인문.정 : 그 혹시 부총님이 설명을 다 하시면 다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부총 : 설명 끝났다.

인문.정 : 의견 드리면, 2장 신설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다. 저희는 별다른 피드백 없다.

총 : 다른 대표자분들도 피드백이나 의견 주시기 바란다.

경경.정 : 경경대 피드백 없다.

동연.부 : 피드백 없다.

자연.비대위.: 피드백 없다.

(이하 동일의견)

부총 : 3장으로 넘어가겠다. 3장을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혹은 모호하게 설명이 된 것을 풀어쓴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것은 학생 총회의 소집 요건이다. 지난 중운위에서 소집 요건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에서는 10분의 1을 출석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적어놓았다. 그리고 탄핵 심판 경우, 따로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함께 적었다. 이 조항에서 새로 추가된 것은 16조에 있는 탄핵 심판 사항이다. 지금까지 총학생회에서 예를 들어, 총부학생회장의 탄핵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관련 절차 규정이 없었다. 이 조항 또한 단과대 회칙 등을 참고해서 작성했다. 단과대 회칙의 해당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최 및 의결 조건은 앞선 15주의 회원 절반 수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 자리에서 탄핵을 심판하고 표결을 붙이는 것을 적은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의 소추안, 심판 그리고 결정 등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일단 탄핵 소추같은 경우는 탄핵안을 상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탄핵 소추권 같은 경우에는 전학 대회, 학운위 이상의 단위가 기존에도 가지고 있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기존과 같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 되었을 경우에는 심판을 착수하는데 해당 심판을 전학대회가 아닌 학생총회에서 착수한다는 점을 더 명확히 규정한 조항이고, 기존의 내용과는 변화가 없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학생 총회가 열린 자리에서 가결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학생총회가 아니라 탄핵 소추안 심판에 의한 학생총회를 다시 열도록 규정하는 조항으로, 해당 조항은 원래 총학생회칙에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단과대 회칙을 참고했다. 다음으로 이하 조항 경우에는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소추인과 비소추인간의 항변과 탄핵 요구의 과정인데, 여기서 소추인은 탄핵을 요구한 자, 피소추인은 탄핵 소추를 당한 자. 예컨대, 이 조항에서는 총부학생회장을 의미하게 될 것. 소추인 같은 경우 그 소추를 의결한 당위가 될 것이다. 피소추인은 항변권 토론 요청권, 증인 소환권을 가지고 해당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서 탄핵심판의 과정이 진행이 되고, 모든 과정이 끝나면 표결에 붙이는 것이 총학생회칙은 아니나 다른 회칙 및 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그대로 참조했다. 네 3장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겠다.

부총 : 설명을 마치기 전에 하나 중운위원분들께 여쭙보고 싶은 것은, 학운위와 전학대회에서 똑같이 재적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 3분의 2의 출석과 제가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학대회와 학운위가 탄핵 소추안을 상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도 추후 학운위 조항에서 중운위 분들 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일단 16조 2항 같은 경우는 전학대회로 적어놨는데, 학운위와 전학대회가 똑같은 절차를 가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이후 신고대조표에서는 해당 자리에 전학대회 및 학운위 등으로 수정을 할 생각이다.

인문.정 : 인문대학 질문 드려도 되는지?

부총 : 네

인문.정 : 질문 드리면, 13조 소집에서 2항에 요구일로부터 12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고 그 3항에는 10일 전에 의장이 권고하여야 한대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2항에서는 요구일 날 공고를 하면 되는 건지?

부총 : 일단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요구일날 공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집 이유 같은 것은 먼저 학생총회의 요구가 있을 때부터 소집 사유는 미리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해도 모순이 발생하진 않으나, 예를 들면 행정적 편의나 소집이 확정된 날로부터 바로 공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를 통해 확정하면 될 것 같다. 일단 지난 중운위에서는 조항간의 모순을 없애는 것이 우선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먼저 반영했다.

인문.정 : 인문대학 의견 드리면, 요구일이 어쨌든 공고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항간의 모순은 사라졌다고 판단한다. 3장에 대한 별다른 피드백은 없습니다.

경경.정 : 질문 있다. 저번 회의에서도 이야기 나온 부분인데, 13조 소집 2항에서 요구일이 확정 요구일이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확정 요구일로 받아들여지는 건지?

부총 : 그것은 사실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의 차이. 지난번 중운위 규정대로 요구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의장을 소집하여야 한다고 쓰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 더 명확해질 것 같다.

경경대. 정 : 감사하다. 경경대 추가 피드백 없다.

사범대. 정: 사범대 추가 의견 없다.

자연대. 정: 자연대 추가 의견 없다.

예술대. 정: 예술대 추가 의견 없다.

(이하 동일 의견)

총: 제 23조에는 기존에 존재했던 총학생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는 즉시 소집한다는 개정이 있다. 수정안에는 없는데 총학생회장의 소집 권한에 대해서 학생총회에 회칙에 넣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여쭙고 싶다.

인문대. 정: 인문대학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서 조항이면 1항의 앞에 쓰면 좋을 것 같다.

부총: 조항의 순서는 다시 정리해서 확정 지을 예정이다.

총: 해당 내용은 원안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는 점 감안해 달라

인문대. 정: 감사하다.

자연대. 정: 자연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경대. 정: 경경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단 출석>

총: 사과대 회장님 지금 들으셔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다. 현재 화면 왼쪽에 보이는 해당 자료는 총학생회장단이 준비한 개정 가안이다. 오른쪽에는 총학생회칙에 대한 원안이다. 현재 개정 가안에 대하여 논의 중이며 학생총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의견을 묻고 있는 중이다.

혹시 학생총회와 관련한 피드백이 있으신 대표자 분들께는 해주시기 바란다.

부총: 없으신 것으로 알고 4장으로 넘어가겠다. 4장은 총투표와 관련된 것이고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결 기구를 상위에 배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4장에 삽입되었다. 지위, 전체적인 내용은 동의하고 용어를 구체화 시켰다. 예를 들어 19조 4장의 제반 사항에 관련된 내용은 예시를 담아 명시하였다. 4장 전체적인 내용은 원안과 다르지 않고 용어만 다시 정리했다는 점 말씀드린다.

인문.정: 인문대학 질문 있다. 총투표가 최고 의결 방식이기 때문에 총투표에서 탄핵 심판권을 가지게 되는지 궁금하다. 인문대학 학생회칙을 개정할 때 총투표 조항을 넣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타 대학 총학생회 총투표 관련 규정을 보면 총투표에 탄핵 관련 이야기가 있다. 고려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다.

부총: 해당 사항은 있는 조항 이상의 건을 고려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고려해보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지금 드는 생각은 탄핵 심판과 같은 경우 현재 학생총회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핵심판의 일련의 과정들

을 달성한 후 표결을 붙이는 것이 지금 개정안이나 기존 일부 단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에 따르는 것인데 총투표는 투표 방식으로 해당 방식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맥락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인문.정: 답변 감사하다. 인문대학 별다른 피드백 없다.

경경.정: 경경대 피드백 없다.

동연.부: 동연 피드백 없다.

(이하 동일의견)

부총: 현재 논의에 부치고자하는 사안이 있다. 총투표의 경우 원안에서도 전체 재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선거 시행 세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총학생회 선거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도 같이 규정에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총투표가 만약 총회와 같이 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이라고 했을 때는 회원은 재적생이기 때문에 전체 재적생의 의견을 묻는다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에 대하여 단위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총: 총투표 제 17조 2항에 총투표는 교내의 모든 의결 기구와 의결방식을 우선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회의 다른 의결 기구 중 학생총회도 포함이 되는데 사실 학생총회는 모든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결이 진행이 된다. 그런데 총투표는 재학생에 한해서 의견을 묻고 의결을 진행한다면 이것이 학생총회의 권한과 총투표의 권한이 상충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든다. 이에 대한 대표자들의 의견을 듣겠다.

부총: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원안에 모순이 존재한다. 원안 17장 총투표에서 총투표의 정의를 재학생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규정했으나 앞서 정해진 모든 의결 방식 단체보다 우선시 된다는 점을 함께 규정했는데 이는 총투표가 17장에 있기 때문에 앞서 정해진 것은 학생총회를 비롯한 모든 학생회의 의결 단체를 의미한다. 원안에 지위에 대한 모순점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이 논의에서 총투표의 지위를 확정짓고자 한다.

인문.정: 인문대학은 “선거와 총투표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지위 자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싶다. 타 학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타 학교에서는 학생 총투표를 학생총회에 준하는 기구로 설정하고 있다. 지위 자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총투표는 전체 재학생이 아닌 재적생, 즉 본회의 회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부총: 방금 총학생회장이 인문대의 의견을 파란 글씨로 정리했는데 다른 단위도 의견 부탁드린다.

인문.정: 총학생회장단 생각도 저와 동일한지 궁금하다.

총: 좀 더 고민을 해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예술.정: 예술대학도 재학생 말고 재적생으로 기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자연.비대위: 자연대도 재적생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부총: 지금 재적생이 더 낫다는 의견이 많으신데 재적생은 본회 회원과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해당 용어로 대체하면 될 것 같다. 다른 단위도 의견 주시기 바란다.

부총: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 검토가 끝날 때 4장에 관한 사항을 다시 여쭙보도록 하겠다. 5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대한 내용이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수정이 된 점은 일단 일전 피드백과 같이 회장단으로 기수를 했다는 점이고, 그리고 학부, 학과 같은 경우는 회장 부회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괄호로 표기를 했다. 그리고 동아리 분과장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동아리 분과장이 메이트제로 되는지 단임으로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지금 동연 측에서 정정해주시면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

부총: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주실 수 있을까요? 전학대회를 비롯해서 의결기구나 중운위 조항에서 공통적으로 달라진 것은 업무와 권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고, 그러나 해당 내용 자체가 개정된 것은 없다. 나열을 다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29조의 중앙운영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길게 적혀있는 것들은 원래는 집행부라든지 대표자라든지 모호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단어를 구체적으로 풀어쓴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부총: 네, 그리고 뒤에 조항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 전학대회 이하의 회의체부터는 회의록 작성을 규정에 포함하고 있다.

부총: 설명 다 끝났다.

부총: 그리고 29조에서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일단 이 개정안에 따르면, 29조 4항에 보면 심판권은 전학대회에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탄핵소추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부총: 방금 말씀드린 거 다시 정정하겠다. 일단 학생총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총부학생회장의 탄핵심판권이기에 때문에 사항은 동일하게 기술이 된다.

부총: 그리고 31조 3항 같은 경우 토론 및 의결에 대한 시행 세칙이 학내에 존재하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으나,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항을 삭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노릇이라, 일단은 원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

인문.정: 인문대학 별도의 피드백 없다.

경경.정: 경경대 별도 피드백 없다.

사범.정: 사범대 별도 피드백 없다.

(이하 동의의견)

부총: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학운위는 구성이나 업무같은 경우는 제17조 조항을 수정해야 될 수 있으나, 아무튼 원안과 동일하고, 여기서 추가를 한 부분이라면 37조 2항에 보면 전학대회를 대체하기 위해 개최하는 경우 45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있다. 전학대회도 동일하게 45일 이내인데 아무튼 기존 원안에서, 제가 45일을 썼나요?, 원안에서는 학운위에 소집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원안에 있던 학운위는 임시적으로 열리는 회의 정도로 규정이 되어있었기 때문. 일단 지금 온라인 상황을 비롯해서 전학대회를 대체해서 학운위를 열고 있는 경우가 잦아지는 만큼 전학대회를 대체해서 학운위를 열 경우에 전학대회와 동일하게 45일 이내에 소집한다라는 과정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해당 조항을 추가했고. 나머지는 원안과 내용이 동일하다.

부총: 아까 그리고 동아리 연합회에 측에 분과장단으로 쓰는 게 맞는지를 여쭙봤는데 답변이 가능한가?

동연.부: 확인 후 다시 개인 톡 드리겠다.

부총: 네 알겠습니다.

인문.정: 인문대학 별도의 피드백 없다.

경경.정: 경경대 별도 피드백 없다.

자연.비대위: 자연대 별도 피드백 없다.

(이하 동의의견)

부총: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중앙운영위원회를 보시면 됨, 중운위도 권한이나 내용이 달라

진 건 없고, 일단 45조에 몇 가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었는데, 일단 원안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총학생회장이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고 하는데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은 없기 때문에, 일단 총부총학생회장 조항에서 총학생회장이 의장을 맡는다는 조항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일단 해당 내용은 개정안에 반영을 하지는 않았고, 3항에 단위의 신설 폐지 합병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원안을 보면 구조조정 등 학내 현황 변경 시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저희가 학교에서 단과대나 학과를 개편할 때 쓰는 관례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위의 신설 폐지 합병 정도로 용어를 바꾼 것이 다임. 그 다음에 이 조항을 해석을 할 때 구성단위의 변경을 전학대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중운위 구성단의 변경을 의미한다. 그런데 해당 내용이 써지지 않은 것이 모호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여기에 중운위를 추가하면 될 것 같고, 그전까지 기존의 구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전학대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학과나 단위의 변경이 없이 기존 중운위 구성원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해당 내용은 원안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인문.정: 인문대학 별도의 피드백 없다.

예술.정: 없다.

경경.정: 경경대 없다.

(이하 동일의견)

부총: 4항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했고 여기는 문장을 예를들어 문법이 틀렸거나 이런 사항들을 정리한 것인데 52조 7항은 원래 원안에서 규정되어있던 것을 직접 가져오긴 했는데 이 조항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할 것 같고 나머지 선출권한대행 선서 신분보장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원안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다.

인문.정: 혹시 부총학생회장님 52조 7항 다 시 한번 얘기해주실 수 있으신지?

부총: 52조 7항에 보시면 총,부총학생회장은 본회 및 회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총장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그렇게 적혀있는 규정안이고 원안에도 해당내용 동일하게 반영되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뭐 삭제할 하던지 개정을 하던지 이렇게 할 바는 아닌 것 같아서 그대로 가져왔다.

인문.정: 인문대학 개정안 전반에 피드백 별도로 없다.

부총: 네 그러면 더 없는 것으로 하고 9장으로 넘어가겠다. 일단 9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이고 본래 집행국으로 돼있던 것을 현재 현황이다 아니면 집행위원회라는 단체의 명칭과 지위를 정립하는 것에 감안을 해서 중앙집행위원회라고 바꿨고 중앙집행위원회라는 쓴 것은 단과대 집행위원회와 구분되서 이 단체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집행위원회라고 기술을 했다. 그리고 지난 피드백에 있었던 국원의 지위적립 그리고 집행국의 명칭 확립에 대해서는 58조에 반영이 되어있다.

인문.정: 인문대학 별도 피드백 없다.

예술.정: 예술대학 피드백 없다.

자연.비: 자연대학 피드백 없다.

부총: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59조 2항을 보시면 의결기구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것이 원래 없었으나 의결기구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것이 집행위원회 혹은 집행국의 관례적인 설립 목적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2항으로 추가되었다. 이상이다.

경경.정: 경경대 별도 피드백 없다.

사범.정: 사범대 별도 피드백 없다.

사과.부: 사과대 질의 있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혹시 전장에 대한 질문 하나 가능한지? 원안에서 총학생회 임기 관련해서 단서조항이 있었는데 혹시 이 단서조항은 다른 조항으로 옮겨졌는지? 원안에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당선년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음에 '단 다음해 선거가 성사되지 못할시 이전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다음해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라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혹시 이 조항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는지?

부총: 네 해당 조항은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아마 쓰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

사과.부: 네 감사하다.

부총: 9장에 대한 피드백은 더 이상 없으신 것 같고 10장은 내부적으로 아직 의견 정립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고 여기 써져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올려드린 파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다음은 단과대학 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이다. 일단 이 조항에서 저희가 논의해야할게 '단과대'와 '단과대학' 중에 어떤 것을 정식 명칭으로 택할지 이 부분은 동아리 연합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지난 피드백과 같이 학생회장단으로 기술해야 할 것은 단과대와 동아리 연합회 관련 장 모두 반영을 하였고 나머지는 내용적으로 변화된 사항은 없다. 그리고 원래 과학생회로 되어있던 것은 학과·부 학생회로 바꿨는데 해당 사항은 현행 중앙대학교 내의 학과편제 등을 반영한 것으로 양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 네 설명을 하나 빼먹었다. 69조 같은 경우는 원안에는 '모든 동아리와 그 회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었다. 69조의 구성에 관한 부분에서, 그런데 동아리 연합회가 중앙동아리로 구성되어있고 중앙동아리 외에 학내에 다른 과동아리나 단대동아리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관례적으로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으나 회칙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동아리로 기술했다.

동연.부: 동아리연합회 발언해도 되는지? 70조에 정동아리, 가동아리 라고 해주셨는데 작년부로 명칭이 살짝 변경이 돼서 가동아리가 아니라 준동아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부총: 네 반영하겠다.

동연.부: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아까 분과장 단 그거 단을 안쓰셔도 될 것 같다.

부총: 네 그래서 일단 여기 중운위 분들중에 단과대분들은 '단과대학 학생회'라 하는게 좋을지 '단과대 학생회'라 하는 게 좋을지 말씀을 해주시고 일단 동아리 연합회 같은 경우는 원래 동아리 연합회 회장단 이라고 써져있는 것이 원안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 해당내용을 유지해도 무방할지 아니면 상위에 단과대 회칙과 같이 동아리 연합 회장단으로 기술 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각기 말씀해주시면 되겠다.

경경.정: 경경대 단과대학 명칭의 경우에는 원어가 단과대학이기 때문에 단과대학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 단과대학 사용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단과대학 (이하 단과대)' 적은 다음에 이후부터는 단과대로 칭해도 상관 없을것 같다.

인문.정: 인문대학 경경대 의견에 동의한다.

사과.부: 사회과학대학도 경경대 의견에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 동의한다.

자연.비: 자연대 단과대학에 동의하며 이하 단과대로 표기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원활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다.

예술.정: 예술대 동의한다.

간호.정: 간호대 자연대에 동의한다.

부총: 네 그럼 단과대는 그렇게 하는걸로 하고 동연은 지금 표기에 이상이 없으신 것인지?

동연.부: 네 맞다.

부총: 네 그러면 선거 예산 재정 관련된 것도 아직 내부에서 협의 중이기 때문에 선거로 넘어가면 지난번 피드백중에 중앙선관위와 중선관위의 용어를 통일해야한다는 피드백이 있었으므로 해당 피드백 반영했고 나머지는 75조 2항의 단서조항을 원 조항으로 풀어서 쓴 것 외에는 변경사항이 하나도 없다.

인문.정: 피드백사항 없다.

경경.정: 경경대 없다.

사범.정: 사범대 없다.

자연.비: 자연대 없다.

간호.정: 간호대 없다.

동연.부: 동연 없다.

부총: 네 그러면 넘어가고 회칙개정은 변경사항이 없고 비대위같은 경우는 원래 비대위가 비대위의 업무 전체가 중앙운영위원회에 준하는데, 해당 내용을 각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이 회칙 제,개정이 있을 때마다 조항을 바꾸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일일이 그때마다 회칙을 바꾸는 것보다는, 중앙운영위원회와 업무가 동일하다고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맥락에 맞게 기술했다. 나머지는 문법상이나 앞뒤 내용이 모순된 걸 정리한 것 외에는 내용 자체가 변경된 것은 없다.

인문.정: 피드백 없다.

경경.정: 피드백 사항 없다.

자연.비대위: 피드백 없다.

(이하 동일의견)

사과.부: 사회과학대학 부총학생회장님 말씀해주신 의견에 동의하긴 하나 전학대회나 학운위 조항에서 참고 조항을 다 달았어서 회칙의 통일성을 위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조항에서도 참고조항을 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의견 드린다.

부총: 반영하겠다.

부총: 그럼 부칙으로 넘어가겠다. 일단 하나씩 설명 드리면 되겠다. 1조 같은 경우는 공포와 효력 발생에 대해서 발표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은 용어인데, 예를 들어 여기는 효력이라고 적었습니다만 공포나 효력 같이 적절한 단어를 찾아야겠다. 오늘은 가안이기에 때문에 해당 내용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 2조 같은 경우는 원안에 흑석 안성 교정으로 적혀있었다. 이는 과거 회칙에서 내려오면서 그렇게 내용이 이어온 것으로 생각이 되나 현재로서 정식 명칭인 서울캠퍼스 안성캠퍼스가 있고 회칙만 봤을 때는 흑석, 안성 교정이 어디를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현행을 반영한 것이다. 3조 4조 같은 경우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일단 원안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은 사항을 제 민주단체 회칙과 관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조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문제의식은 제 민주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의 회칙을 따를 것이며 관례라고 하면 어떠한 관례까지 반영할 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상황에는 다른 학교의 총학생회나 저희 내에 있는 단과대 학생회에서는 모호한 부분을 중운위 의결에 따르고, 그 다음에 모호하지 않으나 회칙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운위 의결에 따르고 사항을 즉시 공고하도록 되어있다. 해당 내용을 일단 적었는데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중앙감사위원회같은 경우는 아직 학생사회

내에서 중앙감사위원회의 기구적 특성을 정립하지 못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어떻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조항 그대로 유지하였다.

인문.정: 인문대학은 3조같은 부분은 수정안에 동의를 하는 바이다. 중앙감사위원회 회칙은 중앙감사위원회 위치 같은 경우는 인문대학은 특별기구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지만 아직 중감위와 애기된 바가 없고 제대로 정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개정안에 동의하는 바이다. 개정안대로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사과.정: 사과대는 단운위에서 총학생회칙으로 피드백 나눌 때 해당 부분이 나왔는데, 기구 설립에 대한 조항을 부칙에 넣는 것이 회칙의 형식이나 의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기구 설립 조항은 정식조항으로 삽입되어야 할 것 같다. 부칙이 아니라 상위조항으로 빼야 할 것 같다.

부총: 일단 마땅한 상위조항으로 넣을 수 있는 마땅한 위치나 아예 따로 장을 만들어서 기술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해당 내용 고려를 해보겠다. 다만 상위 조항으로 넣을 때 우려되는 것이 만약에 어떤 기구로 규정한다고 하면 어떤 기구로 규정할 지에 대해서도 학생사회 합의가 없고, 전체적으로 기구의 지위가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칙을 개정하는 방식을 부칙으로 넣은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된다. 해당 사항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인문.정: 인문대학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감사위원회라는 장이랑 조가 상위로 올라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중감위를 비롯한 여러 기구의 성격 자체가 좀 더 명확히 된 후에 이것이 상위로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이다.

자연.비대위: 인문대 회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인문.정: 궁금한 게 지금까지는 제 민주단체가 혹시 어떤 기구를 의미하는 건지 총학생회장단도 모르는지?

총: 보통 관례상 중운위인걸로 기억을 하고 확실하게 명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운영위원회로 기재했다.

인문.정: 만약에 저는 제 민주단체가 외부 단체를 의미했다면 개정이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총학생회장단의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중앙운영위원회가 이 부분을 결정할 사항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부총: 전체 조항을 봤는데 결정을 하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다. 내일 논의를 한 번 더 진행하고, 내일은 신규대조표 형식으로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전반적으로 내용을 논의한 후에 확정을 지으려고 한다. 총투표의 재적생 재학생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전학대회와 학운위 내에서 각기 탄핵소추안의 요건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도 내일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4 기타안전

총: 기타안전이다. 장학TF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다. 일전에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분들 그리고 단과대운영위원회 위원분들 대상으로 장학TF를 모집한 바 있다. 장학TF에서 활동을 하다가 장학TF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 논의가 진행되었다.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전달하는 중계기구의 역할로 규정을 할 것인지,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요구기구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논의가 있었다. 이 두 가지 역할 모두 임의로 소집된 장학TF에서 결정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더불어 장학제도개선이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촉박하게 진행이 된다는 위원분들의 의견이 있었다. 해당 내용 모두 담당부서인 학생지원팀에 전달하였고, 학생지원팀의 답변은 이렇다. 우선 장학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지난 1학기 환불협의체에서부터 논의가 나왔던 것이고 학교본부의 입장은 인원은 그대로 하되 장학금액을 축소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려고 한다고 답변 받은 바 있다. 이에 총학생회장단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진행되고 당장 2학기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따라서 차기 장학TF 회의에서 위원분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우리 중운위 분들의 의견 또한 있다면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다. 이상이다.

부총: 내일 진행되는 대표자 인권교육에 대한 설명도 다시 드리겠다. 일전에 아주 정확하게는 시간을 공지드리지 않았는데 내일 저녁 7시에 시작한다. 해당 내용은 정리해서 내일 점심에서 오후 사이 중으로 전체 공지를 다시 드리겠으나 내일 7시에 시작되고, 성평등교육 장애인권교육 순으로 진행이 되며, 진행시간은 두시간에서 세시간 사이다. 줌 링크로 학과회장까지 참여하는 것이고 강사진은 성평등교육은 교내 인권센터 전문연구원이 강연하시고 장애인권교육은 외부단체인 장애차별철폐연대의 대표가 강사로 초빙이 되셔서 해당 분께서 오셔서 각기 줌으로 강연하신다. 내일 출석이 파악된 인원은 온라인 교육 수강의무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중도에 장기간 카메라를 끄는 등 출석이 확인되지 않으면 출석에서 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확정된 건 성평등교육같은 경우는 중간에 출석을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출석 확인이 가능하고 장애인권교육같은 경우는 교육이 끝난 후에 출석체크와 내용확인을 겹하기 위한 간단한 퀴즈를 배포하면 해당 퀴즈에 참여한 인원을 출석을 완료한 인원으로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여튼 자세한 내용은 내일 다시 공지 드리겠다. 내일 공지 드리는 내용은 참여대상자인 각 과 학생회장분들께 전체적으로 배포를 해주시기 바란다.

총: 상정된 안건 외에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상정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내일 7시 시작 맞는지?

총: 맞다. 그 전에 공지가 있을 것이다.

예술.정: 회장이랑 부회장까지인지?

총: 맞다.

부총: 해당 내용도 한 번 더 알아보고 공지하겠다. 일단은 학과 회장, 부회장이 있으면 포함하는 것은 지금까지 공지드렸고 해당 내용은 변함이 없으나, 출석을 참석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회장 이하의 인원 혹은 실무진이 참석해도 출석이 허용되는지는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공지드리도록 하겠다.

경경.정: 죄송하지만 아까 학과 회장단이라고 하셔서 경영 반 단위도 해당되는 것 맞는지?

총: 포함된다. 세부전공이 있거나 반이 있을 경우도 모두 인정이 된다.

경경.정: 감사하다.

총: 추가 의견 없으신 걸로 하고 중앙운영위원회 22차 회의 폐회하도록 하겠다. 고생 많으셨다.

회의를 폐회합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